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90
----------	------

제출연월일: 2022. 9. 7.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규정 1회 명시(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대하여 상위법 명시에 따라 중복삭제(안 제4조)
-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안 제33조)

나.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신설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사항 신설(안 제6조의 2)
-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 신설(안 제11조)
- 대부료 감면대상 신설(안 제31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 마. 「산업안전보건법」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2382호, 2022.8.19.)
- 라. 입법예고: 2022. 8. 1. ~ 8. 22.(22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의”를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위촉직 위원수”로, “구성한다”를 “해야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이란”을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담당부서장이 된다**”를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를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명을 하여야**”를 “**설명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조의3 중 “**위원은**”을 “**심의회 위원이**”로, “**회의에서 제척된다**”를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을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1회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대부료**”를 “**사용·대부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의**”를 “**계약**”으로, “**있는지의**”를 “**있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산재되어”를 “구청장은 산재되어”로, “그 관리에 있어”를 “관리하는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산의 보존)”을 “(재산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익상”을 “구청장은 공익상”으로, “보존”을 “보존·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제1항 중 “(보상취득)하여야”를 “(보상취득)해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으로 하고, “부속토지에 한정한다”를 “부속토지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의”를 “토지”로 한다.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기부채납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사용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를 “사용허”로, “검토한 후 하여야”를 “검토해야”로, “명백히 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경우 사용허가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를 “사용허”로, “명시하여야”를 “명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를 각각 “사용허”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를 “사용할 경우”로, “부과·징수하여야”를 “부과·징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를 “사용허”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를 “구청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를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 중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를 “명시하여 대부기간 중”으로, “배제하여야”를 “배제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를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로, “있고, 해지할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산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각하여야”를 “매각해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요율)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나. 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다만, 나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

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할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해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4호”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2사람 또는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출하여야”를 “산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재산관리관이”를 “재산관리관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심히 불합리하다고”를 “불합리하다고”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제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75 경감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50 경감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면율**”을 “**경감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행정기관 :**”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 :**”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율은 80퍼센트**”를 “**경감율은 100분의 80**”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감면**”을 각각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감면**”을 “**경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분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법」 제19조 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⑨ 영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는 면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치하였”을 “예치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취소.해지한”을 “취소·해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를 “중도취소·해지된 경우”로 하며, “감한”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정리부에는”을 “재산관리관은”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를 “기재한 재산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 중 “대부계약을”을 “구청장은 대부계약을”로, “작성·보관하여야”를 “작성·보관해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내 분할납부

- 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라.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또는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5년 이내 분할납부

- 가.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나. 구에서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를 “폐도·폐구거·폐제방
으로서”로 한다.

제42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3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처분하여야”를 “처분해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의하여 신축의”를 “따라 신축”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
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계를 하여야”를 “설계해야”로, “적합하
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
항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을 “등은
별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를 “공용·
공공용건물 신축시”로 하고,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를 “제1항의
별표에”로 하며,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한다.

제48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를 “구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
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를
“공무원이 사용하기”로 한다.

제51조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관사 :”를 각각 “관사:”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사용허가) 제51조제3호의 3급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다음”으로,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를 “준수하여”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한다.

제54조 중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를 “구청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비치정리한다”를 “비치·정리해야 한다”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를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해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전액을”을 “사용료를”로 한다.

제58조 중 “이에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관리해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관사의”를 “관사”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정산하여야”를 “정산해야”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한다.

제60조 중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를 “관사 사용 중 관사”로 하고, “변상한다”를 “변상해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부과. 징수하고자”를 “부과·징수하고자”로,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를 “규칙에”로 하고, “발송하여야”를 “발송해야”로 한다.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의 범위에서”를 “1년 이내로”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지별 60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1호”를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 제1호”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제65조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3.1.1.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구분청 및 동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기관별 /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팀장)	직 원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m ² × 사용인원
		4~2.4m ² /인	2.6~1.5m ² /인	2~1.2m ² /인	1.6~1m ² /인	1.2~0.9m ² /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 ~ 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m ² / 인	0.40m ² / 인		0.33m ²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²) × 대수					
식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m ² × 민원담당공무원 수) × 1.1} + {(0.13m ² ~ 0.2m ² × 민원인 수 × 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 인	11.52m ² / 인		8.64m ² / 인		
자료실		(0.3~0.4m ²) × 공무원수					
창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산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단위 : m²)

구 분	설 계 기 준
공용면적(로비, 복도, 계단)	(직무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 30% ~ 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u>관리하여야</u> 한다.</p> <p>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u>재산의</u>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u>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 ----- ----- <u>관리</u> <u>해야</u> -----.</p> <p>② ----- ----- ----- <u>재산</u> ----- ----- -----.</p> <p>③ ----- ----- <u>필</u> <u>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u> <u>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u> <u>(이하 “규칙”이라 한다)</u>-----.</p>
<p>제3조(<u>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u>)</p> <p>①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u>관하여</u>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u>심의회</u>” 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p>	<p>제3조(<u>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u>) ①</p> <p><u>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u> <u>리법」</u> ----- <u>관한</u> <u>사항을 심의하기</u> ----- -----.</p> <p>② -----</p>

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후단 신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삭 제
- 2.·3. (생 략)
4. 삭 제
5.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포함하여
위촉직 위원수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 2.·3. (현행과 같음)
5. 구청장

⑤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생략)

⑧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 ----- .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 사항 중 -----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

③ ----- 설명 해야 -----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5. (생략)

② (생략)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 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3조의3(위원의 제척) 심의회 위원 -----
-----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관리해야 -----
-----.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 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생략)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 7.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다 1회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실시해야 -----.

② -----

----- 조사해야 -----.

1. (현행과 같음)
2. 사용·대부료 -----
3. (현행과 같음)
4. ----- 계약 -----
----- 있는지 -----

5. ~ 7. (현행과 같음)
③ -----

----- 기록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④ -----
----- 수립
· 시행해야 -----.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
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
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
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
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
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
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
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
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
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
성) ① ~ ② (생략)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하
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

제8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산재되어 ---- 관리하는데 ----

-----.

제9조(재산 보존) 구청장은 공익
상 -----
-----보존·관리
해야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
금 사용) ① -----

----- 노력해야 --
--.

② -----

----- 충당해야 ---
----.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림야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

----- 통보
해야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 적합해야 -----
-.

② -----

----- 해야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
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
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

② ----- 토지 -----

-----.

제16조(무상사용 기간) -----

기부채납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사용일로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 제한) ① -----

----- 사용허 -----

검토해야 -----

----- 명시해야 -----
-----.

② -----
----- 경우 사용
허가 할 수 없다.

-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 -----
- 사용허 -----
----- 명시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 5. 사용허 -----

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재산
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
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
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
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
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
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
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

--

6. 사용허-----

7. ----- 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부 비치) 재산관
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
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한
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
가 -----

----- 포함해야 ----.

② -----

사용할 경우 -----

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서 입찰조건에 정한대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부과·징수해야

-----.

③ -----
사용허-----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여 -----
-----.

⑥ -----
----- 내구연수-----

-----.

제23조(연고권 배제) -----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 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 명시하여
대부기간중 -----
----- 배제해야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을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 거-----

----- 있다. 이 경우 재산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 취해야 -----.

③ -----

----- 매각해야 -----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 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 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 다.

- 1. ~ 6.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 1조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 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 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 부·매각 대상 등) 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촉 진법」 ----- ----- -----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1.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 요율) 영 제3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
 -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 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 이 있는 재산
 - 나. 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 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2.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의 25이상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분 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다만, 나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8.1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
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29조(채광물의 매각대금)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
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할 경우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해야 한다.

제29조(채광물의 매각대금) ① 제27조제4호-----

----- 2사람 또는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법인등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2. (생략)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

----- 작성해야 -----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라 -----

----- 평가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산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관은 -----
----- 따른 -----

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
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
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
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
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
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
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
액 감면할 수 있다.

가. ~ 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사. (생략)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 불합리하다고 ----

----- 첨부해
야 -----.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
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
----- 경우
대부료 -----
-.

1. 면제

가. ~ 사.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75 경감

가. ~ 바.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50 경감

가. ~ 사. (현행과 같음)

② -----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 경감율-----.

- 1. 중앙행정기관: -----
- 2. ----- 공공기관: -----

③ -----

----- 경감율은 100분의 80으-----.

④ -----

----- 경감-----.

⑤ -----

----- 경감-----.

⑥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경감-----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

-----.

1. ~ 4. (현행과 같음)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법」 제19조 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경감할 수 있다.

⑨ 영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는 면제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 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 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 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 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 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 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 략)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 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 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 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 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 적
합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예치했-----

-----.

③ -----
----- 관리해야 -----
----- 취
소.해지한 -----.
반환해야 -----.

중도취소.해지된 경우 -----

----- 제외한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 100분의 100. --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 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삭제 2018.11.5.>

1. 100만원 초과 : 3월 2회 이내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 6월 3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 9월 4회 이내 분할납부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삭 제>

<삭 제>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삭 제>

재산관리관은 -----
-- 기재한 재산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해야 ----. 이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 10. (생략)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 10.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계약서) 구청장은 대부계약을 ----- 작성·보관해야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내 분할납부

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라. 구청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또는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5년 이내 분할납부

가.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나. 구에서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
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
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삭 제
- ⑤ 삭 제
- ⑥ 삭 제
- ⑦ 삭 제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
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
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
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
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
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8. (생략)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사업소 등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3. ~ 8. (현행과 같음)

제42조(공유임야관리) -----

- 해야 ----.

제43조(처분의 제한) -----

- 경우에만 -----

----- 처분해야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따라 신축 -

----- 시행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
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
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
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
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
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
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

----- 설계해야 -----
----- 적합해야 -----.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 않은 -----

등은 별표를-----
-----.

③ ----- 공용·공공용건물
신축시 -----
---- 제1항의 별표에 -----
----- 조사해야 -----.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구위
위원회-----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도모해야 -----.

② -----

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확보해야 ----.

제50조(정의) ----- “관사”란 -----
----- 공무원이 사용하
기 -----
-----.

제51조(관사의 구분) -----
-----.

- 1. -- 관사: -----
- 2. -- 관사: -----

- 3. -- 관사: -----.

제52조(사용허가) 제51조제3호의 3급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

다음 -----
----- 준수하여 -----
----- 다해야 ---
-.

- 1.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

----- 비치·정리해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 사용료를 -----.

-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

----- 등재·관리해야 -----.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
----- 관사 -----
----- 경우 -----
----- 인계해야 -----.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② -----

----- 부담해야 -----
----- 정산해야 -----

----- 인
계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60조(변상조치) 관사 사용 중 관사 -----

----- 변상해
야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 부과 .
징수하고자 -----
-- 규칙에-----
----- 발송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단 신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나. (생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

- 1년 이내로-----

1. ~ 3. (현행과 같음)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필지별 600만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

가.·나. (현행과 같음)

2.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
제1호-----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

----- 누설해서 -----
--.

제65조(합필의 신청) -----

----- 신청해야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에게 의뢰해야 한다.

<삭 제>

다. <기존 제68조에서 이동>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분청 및 동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용면적

<신 설>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분청 및 동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용면적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

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시행일: 2023. 1. 1.] 제7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

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 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
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
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회 계 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조은주
- 연락처: (052)290-3192